



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(약칭: 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)

[시행 2024. 3. 15.] [환경부령 제1082호, 2024. 3. 11., 일부개정]

환경부 (라돈, 신축공동주택 - 생활환경과) 044-201-6799, 6801

환경부 (건축자재, 지하역사, 대중교통차량-생활환경과) 044-201-6798, 6797

환경부 (다중이용시설, 실내환경관리센터, 측정망-생활환경과) 044-201-6919, 6792

제7조(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)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3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자(이하 “측정대행업자”라 한다)를 말한다. <신설 2024. 2. 15.>

②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. <개정 2024. 2. 15.>

③ 제2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5. 12. 30., 2008. 10. 10., 2016. 12. 22., 2024. 2. 15.>

1. 폼알데하이드
2. 벤젠
3. 톨루엔
4. 에틸벤젠
5. 자일렌
6. 삭제 <2005. 12. 30.>
7. 스티렌
8. 라돈

④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(공고)에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 원본을 첨부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5. 11. 18., 2016. 12. 22., 2024. 2. 15.>

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제4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(공고)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다음 각 호의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. <신설 2015. 11. 18., 2016. 12. 22., 2024. 2. 15.>

1.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
2.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
3.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

⑥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. <신설 2008. 10. 10., 2014. 3. 20., 2015. 11. 18., 2024. 2. 15.>